



1월 22일(월) 11:30(행사종료) 이후 사용

비고	# 공동브리핑 : 1. 19(금) 14:00, 정부세종청사 1동 브리핑실, 규제조정실장 등 # 공동배포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금융위원회, 산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	
담당	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(총괄)	과장 정용욱, 서기관 김정아 (044-200-2396, 2397)
	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과 (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)	과장 한동희, 사무관 지사향 (044-200-2911, 2912)
	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 지원TF (신산업 현장애로)	팀장 류동희, 사무관 신인철 (044-200-2664, 2665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 (초연결 지능화)	과장 홍진배, 서기관 송규철 (02-2110-2820, 2822)
	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(핀테크)	과장 주홍민, 사무관 김경수 (02-2100-2970, 2975)
	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(재생에너지)	과장 전병근, 사무관 오종희 (044-203-5160, 5171)
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(에너지신산업)	과장 이경호, 사무관 이헌두 (044-203-5360, 5358)	
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(스마트시티)	과장 이정희, 사무관 황세은 (044-201-4845, 4878)	
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(드론)	과장 정용식, 사무관 정재원 (044-201-4307, 4315)	
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(자율주행차)	과장 이재평, 사무관 김진후 (044-201-3847, 3848)	

신산업·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.

-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-

- ▶ 정부는 신산업 및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위한 대통령 주재 '규제혁신 토론회' 개최
- ▶ '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'(17.9.7 발표)에 따른 신산업·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, 구체적 성과 가시화
 - ①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(우선허용-사후규제) 전환 추진, 총 38건 개선과제 발표
 - √ 차종분류 유연화⇒초경량 전기차 등 新유형 자동차의 조속한 시장출시 가능
 - √ 선박연료공급업을 포괄적으로 정의⇒LNG 선박에 대한 연료공급사업도 가능

② **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관련 법령 제·개정**

-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**행정규제기본법 개정**
- 4개 분야 규제 샌드박스 입법화* 조속 추진
 - * 정보통신융합법, 금융혁신지원법, 산업융합촉진법, 지역특구법
-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**시범사업 지속 발굴**

③ **신산업 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 혁파, 총 89건 과제 발표**

√ 사람과 협동로봇과의 공동작업 허용⇨스마트공장 확산 촉진

▶ **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6대 분야 규제혁신 우선 추진**

- √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⇨액티브X 없는 편리한 인터넷 환경 조성
- √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⇨2020년 자율주행차 시중판매 가능

▶ **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 지속 추진**

□ 정부는 1월 22일(월)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‘규제혁신 토론회’를 개최하여,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그간의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.

- 이번 토론회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인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전 부처가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.

< 규제혁신 토론회 보고안건 >

- 신산업·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(국조실)
-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(관계부처)
 - 초연결 지능화 혁신 (과기정통부)
 -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(금융위)
 - 에너지신산업 혁신 (산업부)
 -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(국토부)
 - 드론산업 육성 (국토부)
 - 스마트시티 조성·확산 (국토부)

< [보고①] 신산업·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>

□ 정부는 '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'(17.9.7 발표)에서 신기술·신산업 규제 혁파방안을 제시하였고,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(원칙허용-예외금지)을 혁신하여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규제 설계 방식인 '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(우선허용-사후규제)*'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*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△포괄적 개념 정의, △유연한 분류체계, △사후평가·관리, △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'혁신적인 제도' 도입 추가

□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혁신적인 규제 설계 방식으로서,

○ 신제품·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○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첫째, 입법방식에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△포괄적 개념 정의, △유연한 분류체계, △사후평가·관리까지 추가하여 신제품·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방식을 전환하는 방식과

- 둘째, △규제 샌드박스과 같은 '혁신적인 제도' 도입을 통해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식을 포함합니다.

<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 >



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(우선허용-사후규제) 전환방안 추진

□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기존의 원칙허용-예외금지(네거티브 리스트)방식을 혁파하여 우선허용-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것으로서,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는 혁신적인 규제 설계방식입니다.

○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난 10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·배포된 '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'에 따라 발굴된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우선 해결합니다.

□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포괄적 개념 정의 (신제품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정의)

◆ 금년 하반기부터 LNG 선박에 대해서도 연료공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

- 기존 선박연료공급업을 선박급유업(船舶給油業)으로 한정
- 개선 '선박급유업' → '선박연료공급업'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



☞ (효과) LNG, 전기 등 다양한 연료공급사업 가능, LNG 연료공급서비스 시장창출(연간 4.5억불)

◆ OLED 등을 활용한 교통안전표지판의 시장출시가 가능해집니다

- 기존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를 '광섬유'를 통해 발현하는 방식 한정
- 개선 광섬유 → 발광체로 개념 확대



☞ (효과) OLED 등 다양한 신소자를 활용한 혁신 제품의 시장출시 가능, 가격이 저렴한 신소자 활용으로 제품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기대
* OLED 활용시 광섬유 이용 방식보다 비용 20% 절감

2. 유연한 분류체계 (신제품 등이 분류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 신설)

◆ 초경량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신속하게 시장출시될 수 있게 됩니다

- 기존 자동차 종류를 구조, 크기, 배기량 등에 따라 제한적 열거
* 초소형 삼륜전기차는 현 체계 내 분류 곤란
- 개선 혁신카테고리 도입하여 차종 구분 유연화



☞ (효과) 새로운 형태의 차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제거로 기업의 예측가능한 투자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가능(삼륜 전기차 등 새로운 형태 전기자동차 시장출시)

◆ **빛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광고 등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옥외 광고가 가능해지게 됩니다**

- **기존** 옥외광고물 종류를 16종*으로 한정 열거
 - * 벽면이용간판, 돌출간판, 공연간판, 옥상간판, 현수막, 애드벌룬, 전단 등
- **개선** 새로운 유형을 포함하는 혁신카테고리 도입



☞ **(효과)** 디지털기술,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광고물 시장 출시 가능,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광고물 개발 촉진
 * 예) 빛을 이용한 설치예술품에 협찬하는 옥외광고 등

◆ **최근 이식기술 개발에 성공한 폐, 팔도 합법적으로 이식할 수 있게 됩니다**

- **기존** 이식이 가능한 장기조직 13종 열거(신장, 간장, 췌장 등)
- **개선**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또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혁신카테고리 도입



☞ **(효과)** 이식기술의 발전속도를 반영하여 선진의료기술에 대한 탄력적 적용 가능, 새로운 장기이식 기술 개발 촉진 (안면·족부 등도 이식 가능한 장기등에 포함 가능)

3. 네거티브 리스트 (금지사항만 열거, 열거되지 않은 사항 원칙 허용)

◆ **그간 금지된 다양한 감염병 질환,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유전자 치료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**

- **기존** 유전자 치료 연구의 대상질환 제한(유전질환, 암, AIDS 등)
- **개선** 대상 질환 삭제, 일정 조건 준수시 모든 유전자 치료연구 가능



☞ **(효과)** 질병 극복 및 혁신적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유인으로 기초연구 활성화 기대 (그간 금지된 감염병 질환, 만성질환 등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 가능)

◆ **사물인터넷 환경센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**

- **기존** 대기오염물질 8종별 대표 측정방법을 각 1개씩 명시
 - * △ 오존(O3) - '자외선광도법' △ 아황산가스(SO2) - '자외선형광법'
- **개선** 대기오염물질별 측정방법 삭제



☞ **(효과)** IoT(사물인터넷) 환경센서를 활용한 다양한 측정방법 적용 가능

4. 사후평가관리 (사전심의·검사 → 자율심의, 사후 평가 방식 전환)

◆ **뮤직비디오가 제작배급업체의 자체심의만으로 시장 출시될 수 있게 됩니다** (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 등급분류 불필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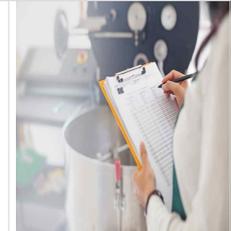
- **기존** 음악영상물과 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필요
- **개선** 제작·배급업자가 공급 전 자체심의,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



☞ (효과) 음악영상물의 신속한 유통 가능, 콘텐츠 제작자 자율 및 창의성 확보

◆ **식품 시험검사기관의 장비기구 구비 부담이 줄어듭니다**

- **기존** 시험·검사기관 지정 시 지정요건에서 정한 '장비 및 기구 목록표'에 기재된 장비 및 기구를 반드시 갖추어야 함
- **개선** 사전에 규정된 설비기준(목록표) 삭제, 사후에 보유 설비 적정성 평가



☞ (효과) 사용하지 않는 장비기구 구비 부담완화, 기관 사정에 따라 맞춤형 시험·검사 실시 가능

* 예) 식품용수 노로바이러스 검사기관 : 양수펌프, 휴대용 발전기 구비 불요

2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관련 법령 제·개정 추진

□ 우선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'행정규제 기본법'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개정안에서는 신산업·신기술 분야 '우선허용·사후규제' 원칙을 규정하고, 신산업 분야 규제특례 부여방향 및 규제정비 의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.

※ (주요내용) △규제 신속확인 △규제 신속 정비의무 △특례부여 및 고려사항

□ 또한,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분야별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.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, 신사업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.

- △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, △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, △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, △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개 법률 제·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

※ (4개 법안 핵심요소) △규제특례의 개념 및 유형 △특례부여 결정절차 △유효기간 및 조건 △특례취소 △손해배상 △보고 및 점검 △법령정비 등

<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입법 추진내용 >

- (ICT융합 분야) 「정보통신융합특별법」 개정으로 ICT융합 신기술·신서비스의 실증 테스트가 가능토록 실증목적 규제특례 제도 도입 (17.11.8 발의, 과기정통부)
- (핀테크 분야) 혁신금융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금융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토록 「금융혁신지원특별법」 제정 추진 (금융위)
- (산업융합 분야) 「산업융합촉진법」 개정을 통해 융복합 신산업 실증규제 특례 제도 도입 (산업부)
- (지역형 규제 샌드박스)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 지원 가능토록 「지역특구법」 개정 (중기부)

□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있고,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활성화할 계획입니다.

○ 이번에 발굴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

<p>◆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를 허용하겠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존 고객정보와 관련없는 시스템*에 대해서만 클라우드 이용 허용 * 상품개발, 리스크 관리, 경영지원 등 고객정보와 무관한 시스템 ▪ 개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정보와 관련된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시범사업(안전성 테스트)을 할 수 있도록 허용 <p>☞ (효과) 중소형 핀테크 업체의 경우 클라우드 활용 시 보안성 제고 및 고객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핀테크 사업 개발 가능</p>	
<p>◆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업체도 대출심사, 예금계약 등 업무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됩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존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*는 제3자에 위탁 불가 * 대출심사, 예금·보험 계약, 신탁인수 등 ▪ 개선 제3자(지정대리인)에 '본질적 금융 업무' 위탁(최대2년) 허용 <p>☞ (효과) 업무위수탁을 통한 스타트업의 혁신적 금융 서비스 개발 가능 * 예) 인공지능에 기반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심사 수행 가능</p>	

3 신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결

□ 한편, 신산업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하고 있습니다.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등 현장에서 느끼는 총 89건의 규제애로를 해결했습니다.

□ 신산업 현장애로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현행 규제와 상충 → 신산업 허용을 위한 법령 개선

◆ 라이다(LiDAR)* 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차도 도로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

* Light Detection and Ranging; 레이저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

- **기존** 라이다가 과속단속 카메라 기능 방해 시 도로교통법 처벌 대상
- **개선** 자율주행차에 라이다 센서 장착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

☞ **(효과)**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라이다 센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과속단속카메라 개발 등 연관 산업 기술개발 촉진

◆ 로보어드바이저(온라인 금융상담사)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

- **기존** 인공지능 금융상담사인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(온라인) 투자일임계약 불허
- **개선** ①영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 또는 ②거래기록 축적 및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투자일임계약 허용



☞ **(효과)**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대중화 및 투자 활성화 기여

◆ 사람과 협동로봇이 공장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됩니다

- **기존** 사람이 협동작업장 내 체류 시 로봇은 반드시 정지해야 하므로 공동작업 불가
- **개선**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사람과 협동로봇 공동작업 허용



☞ **(효과)** 사람과 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 확산을 통해 국내 협동로봇 산업 활성화 및 스마트공장 확산에 기여

◆ 농업진흥구역 내 모든 적법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

- **기존** '15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 건축물에만 태양광발전 설치 허용
- **개선**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에 태양광발전 허용



☞ **(효과)** 생산기반이 약화된 농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 효과 및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활성화

2. 근거 규정 미비 → 신산업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

◆ 산림에 방치되어 왔던 가지 등 임목부산물의 활용이 촉진됩니다

- **기존** 별채 후 가지, 간벌목 등 임목부산물이 경제성 부족으로 산림에 방치
- **개선** '미이용 임목부산물' 법적 개념 신설 및 적정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산장부여 등 활용촉진 방안 마련



☞ **(효과)** 미이용 임목부산물('16년 기준 약 200만톤) 활용시, '21년도에 약 137만톤, 3,580억원 규모의 국내 목재펠릿 시장형성 기대('16년 산림청 연구용역)

◆ 디지털 교과서의 검정 공고기간이 단축됩니다

- **기존** 이미 검정을 마친 서책형 교과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교과서 개발 시에도 검정 공고기간은 서책형 교과서와 동일(최소 1년 6개월)
- **개선** 디지털 교과서 검정절차에 대한 별도의 Fast Track 마련



☞ **(효과)**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교과서의 시장진입 기간 단축으로 학습 몰입감 제고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

3. 현행 규정의 적용여부 모호 → 규정 명확화

◆ 화학물질관리법이 탄력 운용되면서 별도 시설투자비 부담이 해소됩니다

- **기존** GMP*시설에서 의약품·의약외품 제조 시 화학물질관리법** 적용이 제외되거나 세척용 염산 등 부원료 제조사용 시 적용 여부가 모호하여 화관법 적용 시 GMP와 상충
 - * Good Manufacturing Practice: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
 - ** 화학물질관리법(이하 화관법) : 화학물질의 관리, 화학사고 예방대응 기준 등 규정
- **개선** 현장에 적합한 흡입장치 등 사용 시 안전성 평가를 거쳐 화학물질 관리법 탄력 운용,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시 시설기준 합리화



☞ **(효과)** GMP 시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및 기업의 별도 시설투자비 부담 해소

◆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(DTC*)는 의료광고 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습니다

- * Direct To Consumer :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 기업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
- **기존** 유전자 검사 기업(비의료기관)이 DTC 광고 추진 시 광고매체에서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요구
- **개선** DTC는 의료행위가 아니며 관련 광고도 의료광고가 아니므로 심의 불필요



☞ **(효과)** 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의료법 적용여부에 대한 업계 혼란 방지 및 사전심의 없는 광고 시행으로 DTC 시장 활성화

4.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→ 간소화

◆ 정보보호 인증제도(ISMS, PIMS) 통합으로 기업의 관리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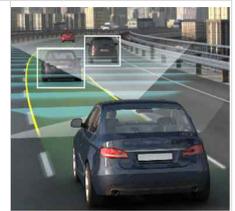
- **기존** 정보보호 인증제도(ISMS, PIMS)*간 심사항목의 상당 부분이 유사함에도 각각 인증서 취득
 - * ISMS(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, 정보보호관리체계) : (목적)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 신뢰성 (성격)의무(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사업자) + 임의
 - * PIMS(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, 개인정보관리체계) : (목적)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, (성격) 임의
- **개선** 정보보호 인증제도(ISMS, PIMS)를 단일 체계로 통합



☞ **(효과)** 인증제도 통합으로 심사기간 단축(평균 13일→평균 9일) 및 인증수수료 절감(평균 27백만원→평균 19백만원) 등 기업의 부담 완화

◆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

- **기존** 모든 허가 신청 차량에 대해 안전성 검증
- **개선** 동종 차량 여러 대에 대해 허가 신청하는 경우 1대만 선별 검증



☞ **(효과)**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기간 단축으로 연구 불편 최소화
 * 예) 동일 차량 범위의 자율주행차 5대에 대해 1대의 안전성 검증으로 같음(20일→4일로 단축)

◆ 의료기기의 해외 허가를 위한 제출서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

- **기존** 의료기기 기술문서의 재발급* 시 최종본이 발급되나 해외 허가용으로는 재발급 불가 → 변경이력이 누적된 방대한 양의 기술문서 제출
 - * 재발급 사유: 잃어버린 경우, 못 쓰게 된 경우,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
- **개선** 의료기기 기술문서의 재발급 사유에 해외 허가용 추가



☞ **(효과)** 해외허가 시에도 최종본 발급 허용 → 중국 등에 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인허가 시 해당국가 심사 지연 등 애로사항 해소로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에 기여

◆ 채혈침 등 글로벌 의약품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수입이 간편해집니다

- **기존** 글로벌 임상시험용 의료기기(채혈침 등)는 통관 때마다 매번 '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'를 발급받아 제출
- **개선** 다년도 임상시험 시 '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'를 최초 1회만 발급사용 하도록 절차 간소화



☞ **(효과)**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수입 소요기간 단축으로 글로벌 임상시험 수행 역량 향상 및 수탁기회 증대

< [보고②]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>

- 이와 함께, 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 관계부처의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.
- 이 자리에서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주요 선도사업인 초연결 지능화, 핀테크, 에너지신산업, 자율주행차, 드론, 스마트시티의 본격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, 이에 대한 효과적인 혁신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습니다.
- 선도사업의 규제혁신 성과가 다른 신산업 분야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도록 6개 주요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, 혁신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6개 선도사업별 규제혁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 초연결 지능화 혁신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

-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새로운 규제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핵심 기반인 지능화 DNA(Data-Network-AI)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합니다.

[D: 데이터 -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]

적정하게 비식별화된 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시민단체, 산업계, 4차위,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안 마련

- **기존** '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('16.6월)'을 만들었으나, 법적 근거가 부족
- **개선** 시민단체, 산업계, 4차위,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안 마련 추진

☞ **(효과)** 비식별 정보 활용을 제고하여 스마트시티, 핀테크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

자신의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정보주체 중심의 데이터 활용체계 확립,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술개발 지원

- **기존** 카드회사(거래기록)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이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기 불편하거나 시간·비용 소요
- **개선** 본인 동의 하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 실시('18년) 및 본인정보 활용 지원 제도 도입
 - 개인정보 제공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, 암호화한 상태에서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동형암호 기술 등 개발 지원

☞ **(효과)**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개인정보/위치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습니다.

- 사물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에서 제외

- **기존** 드론과 같은 사물의 위치정보도 보호
- **개선** 개인의 위치정보와 구분하여 드론·자율차 등 사물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(위치정보법)

☞ **(효과)** 개인/위치정보와 그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

[N: 네트워크 - 5G·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]

5G,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하겠습니다!

- 통신설비 공동 구축·활용 규제 개선

- **기존** 5G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경쟁은 치열해지는데, 5G용 주파수는 주파수 도달 거리가 짧아서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야 해 5G 네트워크 투자 부담이 큼
- **개선** 5G 네트워크를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구축·활용 대상을 이통사까지 확대하는 등 공동구축·설비제공 규제를 개선(고시)

☞ **(효과)** 통신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5G 네트워크를 구축('19.3월 세계 최초 상용화)할 수 있고, 국내 장비업체는 국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가능

IoT 기반 다양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출시되게 하겠습니다.

- 비통신 제품과 통신서비스의 결합에 대한 별정사업자 등록 면제

- **기존** 자전거, 신발 등에 간단한 통신기능(IoT 결합)을 넣어 사업을 하는 데도 별정사업자 등록(자본금, 기술인력 등) 필요
- **개선** 벤처기업 등이 자사 제품에 IoT 서비스 등을 결합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고, 통신사업 허가제도 등록제로 완화(전기통신사업법). 스마트공장 IoT, 자율주행차 센서 등 신산업 주파수 공급 확대 및 기술기준 마련

☞ **(효과)** 자율차,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제품이 통신과 결합되어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

[A : 인공지능·지능화 - 지능화 확산]

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.

- 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선제 도입

- **기존** 혁신적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경직성 문제 심각(언론, 전문가)
 - **개선**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인 ICT 분야에 '규제샌드박스' 선제 도입(정보통신융합법)
- ☞ **(효과)** O2O,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산업의 사업화 기회 제공

공인인증서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만들겠습니다.

-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

- **기존** 인증시장이 공인인증서 위주로 획일화되어 액티브X 없이 실현 가능한 신기술 인증수단의 도입에 어려움.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전히 액티브X, 실행파일을 설치해야 해 불편
 - **개선**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, 액티브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도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
 - 제도 변경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(명칭, 효력 등 우월적 법적 지위만 폐지)는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서 지금과 같이 계속 사용 가능
- ☞ **(효과)** 공인·사설인증서간 차별 폐지로 블록체인·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인증수단 확산 및 핀테크·전자거래 등 혁신적 비즈니스 활성화, 액티브X 없는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으로 국민불편 해소

②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(금융위원회)

- 좋은 아이디어, 혁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감히 규제를 개선하고,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 부담없이 혁신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.

클라우드펀딩 대상 업종 및 투자한도를 확대합니다.

-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개정

- **기존** 업종제한 규제*로 좋은 창업 아이디어라도 클라우드펀딩 이용이 불가능하고, 투자경험이 축적된 투자자도 '일반투자자'로 분류되어 과대한 투자한도가 적용
* 음식점업(근로자 20인 미만), 이미용업 등은 클라우드펀딩 이용이 제한
- **개선**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규제를 완화하고, 투자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는 '적격투자자'로 분류하여 투자한도(연간) 확대
* (일반투자자) 기업당 500만원/총 1천만원, (적격투자자) 기업당 1천만원/총 2천만원

☞ (효과) 클라우드펀딩 이용 확대로 혁신적 스타트업 양성

모바일앱 등으로 건강관리 노력을 하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합니다.

-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

- **기존** 해외는 보험계약자가 건강관리를 하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'건강증진형 보험'이 활성화되어 있으나, 국내는 현행법상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혁신상품 개발에 애로
- **개선** 건강관리기기(IoT), 모바일앱(App) 등을 통해 건강관리 노력을 하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, 건강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적 보험상품 개발 지원
* (예) 스마트워치와 연동하여 연간 360만보(하루 만보) 달성시 차년도 보험료를 5% 할인

☞ (효과) 계약자는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 절감

로보어드바이저(온라인 금융상담사)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
-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및 「금융투자업 규정」 개정

- **기존** 현행법상 비대면 일임계약이 금지되어 있어 로보어드바이저는 온라인을 통한 투자일임계약이 불가능하고,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성장에도 장애 요인
- **개선** 로보어드바이저(테스트베드 통과)에 대해 ① 영상통화로 투자상품을 설명하거나, ② 거래기록 추적 및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대면 일임 계약 허용

☞ (효과)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및 혁신적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발굴

고객정보도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합니다.

- 「규제 샌드박스」에서 테스트베드 실시

- **기존** 클라우드 활용시 서비스 개발 및 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하나, 현재는 단 한건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만 있어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
- **개선**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정보와 관련된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해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'규제 샌드박스' 도입

☞ (효과)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정보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 지원

3 에너지신산업 혁신 [산업통상자원부]

-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지원을 위해 입지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합니다.

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규제를 완화합니다.

- 염해피해 간척농지의 태양광 일시사용(20년) 허용

- **기존**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로 사용이 어려운 염해피해 간척지의 경우에도 태양광 시설 설치 불가
- **개선**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 간척농지는 태양광 용도로 농지 일시사용(20년) 허용
- ☞ **(효과)**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부지 확보 지원 (염해피해 간척지 규모: 1.5만ha)

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.

- 일반입찰의 경우에도 최대 20년까지 임대 허용

- **기존** 일반입찰로 재생에너지 사업 용도로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
- **개선**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20년까지 확대
- ☞ **(효과)**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 부지 확보 지원

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부담을 완화합니다.

-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

- **기존**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수상태양광 및 기존 건축물 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때도 육상 태양광 설비 설치와 동일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
- **개선** 수상태양광 및 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설비 설치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"부지사용권, 기반시설, 경관 및 안전, 위해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"으로 검토기준을 최소화
- ☞ **(효과)** 사업자들의 허가기간 단축(4~6개월→1~2개월) 등 허가에 따른 부담 완화

재생에너지사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합니다.

- 공유수면 점·사용료 산정기준 개선

- **기존** 시화호 등 수도권 인근의 공유수면을 활용하여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, 인접 지역의 지가를 기준으로 점·사용료를 산정하여 비용부담 과다
- **개선** 수도권 등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 공유수면 점·사용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발전설비용량 등 새로운 기준 도입
- ☞ **(효과)** 수상태양광 사업 수익성 제고로 에너지신산업 투자 활성화

□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합니다.

소규모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지원합니다.

-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(FIT) 제도 도입

- **기존** 소규모 사업자들은 전력시장가격(SMP) 하락으로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 악화,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(RPS)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 곤란
- **개선** 일정 규모 이하 태양광 설비에 대해 REC 발급입찰 절차 없이 발전6사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 보장 (협동조합·농민 100kW 미만, 개인사업자 30kW 미만, 5년 한시 적용)

☞ **(효과)**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

자가용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혜택이 확대됩니다.

- 자가용 태양광 잉여전력 현금정산, 상계거래 대상 확대

- **기존** 자가용 발전은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은 이월만 가능, 공동주택의 경우 상계거래 불가
- **개선** 자가용 태양광 발전의 잉여 전력에 대해 현금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한전과 단일 계약을 체결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상계거래를 허용

☞ **(효과)** 국민 혜택 확대로 자가용 설비에 대한 투자 확대

□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태양광, 풍력 등 소규모 분산자원의 중개거래가 가능해집니다.

- 분산자원 중개시장 및 중개사업자 근거 마련

- **기존** 소규모 분산자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직접 판매
- **개선** 분산자원 중개사업자가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아 관리하고, 시장거래를 중개

☞ **(효과)** 전력시장 신규사업자 촉진

가정·상가 등 일반 국민의 DR시장 참여가 가능해집니다.

- DR시장 참여조건 완화, 인센티브 설계 등

- **기존** 높은 수준의 참여요건을 충족하는 공장·빌딩 등 대규모 전력소비자만 DR시장 참여
- **개선** 가정·상가 등과 같은 소규모 전력소비자도 DR시장 참여 가능

☞ **(효과)** ICT 활용 신규 서비스 창출

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(ESS) 설치가 가능해집니다.

- 배전선로에 ESS 설치 가능근거 마련

- **기존** 배전선로에 ESS를 설치하여 전력품질 개선이 가능하나 명시적 근거의 부재로 설치 유보
- **개선** 발전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과다선로를 중심으로 ESS를 설치하여 전력품질 제고

☞ **(효과)** 재생에너지 집중 배전선로의 전력품질 향상

4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(국토교통부)

□ 규제혁신으로 자율주행차가 마음껏 달릴 수 있게 됩니다.

자율주행차 기술,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쉬워집니다.

- '규제 샌드박스' 도입, 시험운행 허가절차 간소화

- **기존** ① 업계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려해도 개별 법령의 다양한 규제를 모두 검토·고려해야하는 부담
② 동일한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마다 일일이 허가요건을 검증
 - **개선** ① 스마트시티 등에 자율주행 관련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'규제 샌드박스' 도입
② 기존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인 경우 서류 확인만으로 허가
- ☞ **(효과)** 기술개발 촉진 및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

2020년에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판매(상용화)될 수 있도록 합니다.

-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과 보험 제도 마련

- **기존** ① 자율주행차도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으나 아직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본격적인 제작에 제한
② 현행 보험제도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기준으로,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 처리에 대한 우려 존재
 - **개선** ① 자율주행차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방법 마련
② 업계, 국민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보험 제도 마련
- ☞ **(효과)** 안전한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시장 출시 촉진 및 국제기준 선도, 자율주행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및 가해자의 책임문제 명확화

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기술은 우선 허용하겠습니다.

- 원격 자동주차 기술 등 허용

- **기존** 운전자 하차 후 차량 스스로 주차하는 원격 자동주차 기술이 개발되었으나, 운전자가 하차하는 경우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술 상용화에 제한
 - **개선** 운전자 하차 시 적용되는 준수사항 제한 개정, 이와 함께 자동차 안전기준도 개정
- ☞ **(효과)** 원격 자동주차 기술 상용화 촉진

자율주행 스마트인프라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.

- 스마트도로,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표준 마련

- **기존**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도로,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관련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들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표준 등 제도 마련 요구
 - **개선** 스마트인프라 관련 표준, 인증 등 제도 마련
- ☞ **(효과)** 우리 제품의 세계적 호환성 확보 및 국제표준 선도, 해외진출 용이

5 드론산업 육성 (국토교통부)

□ 규제혁신으로 드론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하겠습니다.

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드론산업이 활성화됩니다.

- 유망 활용분야 '규제완화+재정지원' 및 자유로운 비행환경 조성

- **기존** 활용모델 및 기술력은 있으나 운용경험·기술검증 미비로 현장적용(상용화)에 애로
- **개선** 민간에서 현장적용이 어려운 분야를 선정하여 샌드박스 구역(3-11km) 내에서 각종 규제, 인허가 일괄 의제 및 기술컨설팅 지원

☞ **(효과)** 재난·재해 모니터링, 인프라 정밀점검, 도서지역 수송 등 유망 활용분야 조기 상용화

- **기존** 드론 개발업체·연구기관이 집중된 서울·대전은 군·원자력발전소 비행금지구역 등으로 비행이 제한되는 지역이 많아 개발·연구에 제약
- **개선** 업계 수요가 많은 수도권 등에 드론 전용비행구역 추가확보 및 기존 전용구역 상시화 추진

☞ **(효과)** 수도권 등에 비행테스트 등을 위한 자유로운 비행 공간 확보로 활성화 지원

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규제가 적용됩니다.

- 형식적·일률적 규제방식을 탄력적 최소한 규제방식으로 전환

- **기존** 드론을 무게·용도 중심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(기체신고, 비행승인, 조종자격 등) 중이나, 사고시 피해가 적은 저성능 드론에도 고성능 드론과 동일한 규제 적용
- **개선** 무게·용도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위험도·성능 기준으로 개선

☞ **(효과)** 저성능드론에 대한 활용규제 완화 및 고성능드론에 대한 안전관리 내실화

미래 무인항공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.

- 한국형 드론 교통관리체계 K-드론시스템 개발

- **기존** 드론 주요 선도국은 IoT·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교통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
- **개선** ICT·빅데이터·AI 기술 기반으로 비행정보 공유, 경로분석·자동관제 등 K-드론시스템 개발(고도 300m↓)로 미래 교통관리체계 구축

☞ **(효과)** 드론택배·무인항공택시 등이 활용되는 미래 무인항공시대 핵심인프라 개발

6 스마트시티 조성·육성 (국토교통부)

-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을 통해 도시공간을 혁신의 場으로 조성하고, 국민이 체감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“국가 시범 스마트시티”를 미래 신기술의 실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.

- 규제 샌드박스 도입

- **기존**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된 스마트시티의 경우 각 분야의 수많은 규제들을 일괄 혁신해 다양한 실험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나, 현재 개별법 상에서는 추진에 한계
- **개선** 백지상태의 “국가 시범도시”를 자율주행차,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 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조성
 - 법령 제·개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과 각종 특례규정을 도입하되,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반영

☞ **(효과)**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총집적한 스마트시티의 조성 및 확산 촉진

기존 도시는 스마트하게 활용하겠습니다.

- 혁신성장 진흥구역 운영

- **기존** 기존도시의 경우 이미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른 입지규제 등으로 인해 급변하는 스마트시티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
- **개선** 기존의 도시계획에 구애받지 않고, 특색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자유롭게 계획·조성할 수 있도록 “혁신성장 진흥구역” 제도 도입

☞ **(효과)**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공간 활용으로 기존도시의 활력 제고

열린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.

- 지자체 공공목적 자가망 확대 검토, 다양한 경제주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허용

- **기존** ① 지자체는 자가통신설비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나, 일부 분야만 가능
② 스마트시티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주체의 용이한 시장진입이 필요하나, 현재는 기업규모에 따라 시장 진입에 제한
- **개선** ① 지자체가 공공목적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자가망 연계 분야 확대 혹은 민간서비스 활용 등 제도개선 추진(과기부 협업)
② 융복합 산업 창출 국내 사업참여를 통한 해외수출 레퍼런스 등을 감안해 국가 시범도시 등 스마트시티 분야에 한정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 참여 허용(과기부 협업)

☞ **(효과)** 국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 융복합 서비스를 확대 제공